

제221회 정례회
2003.12.18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

전문위원 임석 규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 -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증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
 - 동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, 2002. 12. 26 개정)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, 2003. 7. 14 개정)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,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묘자 하는 것입니다.
 - 주요글자로는
 -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도록 하며 (안제3조)
 -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·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(안제7조)
 -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.(안제10조)
 -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금번 제출된 동 개정 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·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방법과 전자입력시 발생되는 서류의 폐기방법,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방법 및 보존기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